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안 제36조의2)

법률 개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제49조 제1항에서 제36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및 업무 확대(안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는 임원에 업무집행자 등을 추가하고 CISO 업무에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승인, 수탁업체 등에 대한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권한을 추가함.

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신설(안 제36조의10)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대상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 신설(안 제36조의12, 안 제36조의13)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자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자로 정하고,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 등을 구체화함.

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47조, 제49조의2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심사 방식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강화된 인증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화함.

바. 침해사고조사위원회 신설(안 제58조의2~제58조의5)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을 신설함.

사. 침해사고의 통지 신설(안 제58조의8)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60조의10~제60조의14)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이행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징금 부과·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작성·운용 등 신설(안 제60조의15)

침해사고 매뉴얼의 작성·제출 의무 대상자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9. ~ 8. 18.)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의 제목“(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를“(정보통신망연결기기 및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
· 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을 포함한다)”를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이사,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사원

다.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라.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안성 검토 및 승인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 관리 또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제36조의10부터 제36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6조의11(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전산운영 및 개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준법·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재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6. 인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7. 그 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로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 결과의 이행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 위협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4항라목에 따른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보호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정보보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2(정보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자

(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6조의13(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및 책임 체계의 적정성
2.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수준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수립·운영
3. 침해사고 및 재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복구 체계의 적정성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자에게 정보보호수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결과
2. 평가 대상자가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3. 제1호 및 제2호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여부 등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를 하기 위하여 현장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3항 후단 중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제4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례”를 각각 “완화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강화 적용 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전년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최근 3년 이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자

나.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제5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①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5의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 또는 중대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 또는 중대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호 중 “예보·경보의 전파”를 “예보·경보·통지의 전파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으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제58조의7 및 제58조의9로 하고,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8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 범위·방식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에 관한 사

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8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8조의6(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의 실시) ① 법 제48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보·경보·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침해사고의 규모

2. 침해사고가 발생한 서비스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해당 여부

② 법 제48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제58조의8(침해사고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유용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원인,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5. 관련 민원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1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의7(중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의3제1항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의7(중전의 제58조의2)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48조의3 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8조의3제

1항과 이 영 제58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제60조의17 및 제60조의18로 하고, 제60조의10부터 제60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3. 사업개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과 사유
2. 산정기간, 1일당 금액 및 산출근거
3. 부과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수납기관
6.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는 별표 5의 3과 같다.

제60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8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0조의15(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 ① 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2.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제출 및 수정·변경 여부

3. 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전 실태점검 결과

4. 그 밖에 실태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개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제1호의 조치에 따른 결과
3.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

제74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종전의 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250	2,500	5,000
--	--------------	-------	-------	-------

별표 9 제2호라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76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250	2,500	5,000
--	--------------	-------	-------	-------

별표 9 제2호마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2호”를 “법 제76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터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를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호 퍼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3”을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4”를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4”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바목의2)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5”를 “법 제76조제2항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3)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6”을

“법 제76조제2항제2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고목(종전의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3호”를 “법 제76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자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를 “법 제76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2	300	600	1,000
--	----------------	-----	-----	-------

별표 9 제2호로목(종전의 자목의2) 위반행위란 로목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란 로목(종전의 자목의2)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4”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카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위반하여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며, 같은 란 아목(종전의 카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를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을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 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 의4	750	1,500	3,000
---	--------------------	-----	-------	-------

별표 9 제2호저목(종전의 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를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5”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를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를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8”로 하고, 같은 호 오목(종전의 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7호”를 “법 제76조제4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누목(종전의 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6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 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제10 호	300	600	1,000
---	-------------------	-----	-----	-------

별표 9 제2호두목(종전의 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7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7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법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	법 제76조제4항제11	300	600	1,000
--------------------	--------------	-----	-----	-------

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	호의4			
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별표 9 제2호루목(종전의 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8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8호”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	법 제76조제4항제12	300	600	1,000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호의2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표 9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처. 법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	법 제76조제3항제4호	600	1,200	2,000
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	의5			
뉴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커.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법 제76조제3항제4호	600	1,200	2,000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6			

별표 9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과목(종전의 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7호”를 “법 제76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8호”를 “법 제76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9호”를 “법 제76조제2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토목(종전의 고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3”을 “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노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9호의2”를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2”로 하며, 같은 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	750	1,500	3,000
리.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	750	1,500	3,000

별표 9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로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10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포목(종전의 보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3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3호”로 하며, 같은 호 호목(종전의 소목) 위반행위란 호목 중 “휴지·폐지·해산”을 “휴업·폐업·해산”으로 하고, 같은 란 호목(종전의 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4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구목(종전의 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5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5호”로 하고, 같은 호 무목(종전의 토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9호”를 “법 제76조제4항제19호”로 하며, 같은 호 부목(종전의 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0호”를 “법 제76조제4항제20호”로 하고, 같은 호 수목(종전의 호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2”를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우목(종전의 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3”을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주목(종전의 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4”를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4”로 한다.

별표 9 제2호추목(종전의 두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1호”를 “법 제76조제4항제21호”로 하고, 같은 호 쿠목(종전의 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2호”를 “법 제76조제4항제22호”로 하며, 같은 호 투목(종전의 무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3호”를 “법 제76조제4항제23호”로 하고, 같은 호 푸목(종전의 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4호”를 “법 제76조제4항제24호”로 하며, 같은 호 후목(종전의 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12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	3,000	3,000	1,000
2) 법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	2,000	2,000	1,000
3) 법 제73조 각 호 및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	1,000	1,000	1,000	750

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별표 9 제2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0	1,500	1,500	600
--	-------	-------	-------	-----

별표 9 제2호4)부터 8)까지를 각각 5)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호 후 목5)(종전의 수목4)) 위반행위란 5) 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

별표 9 제2호후목6)(종전의 수목5)) 위반행위란 6) 중 “법 제76조제1항제7호”를 “법 제76조제2항제7호”로, “제9호의2”를 “제9호의2,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0

별표 9 제2호후목7)(종전의 수목6)) 위반행위란 7) 중 “법 제76조제2항 각 호”를 “법 제76조제3항각 호”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0

별표 9 제2호후목8)(종전의 수목7)) 위반행위란 8) 중 “법 제76조제3항 각 호”를 “법 제76조제4항각 호”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00 |

별표 9 제2호후목9)(종전의 수목8))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0 |

별표 9 제2호모목(종전의 우목) 위반행위란 모목 중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을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란 모목(종전의 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5호”를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을 “과목부터 버목까지의 규정(러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정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의 이행 및 출입·조사의 협조를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 및 출입·조사 방해·거부·기피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다.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1일 평균매출액 $\times$ 2/10,000로 한다.

[별표 5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11제3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침해사고의 횟수 및 발생 빈도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성의 정도 및 과실의 중대성

다)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규모

라)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바)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사)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의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3)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정보보호수준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 등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의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u>정보통신망연결기기</u> <u>등의 범위</u>) (생 략)	제36조의2(<u>정보통신망연결기기</u> <u>및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u>등의 범위</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 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u><신 설></u>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원을 포함한다)

가.·나. (생략)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

--- 임원”-----
-----.

1. (현행과 같음)
2. -----

--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을 포함한다)

<신설>

<신설>

다.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이사,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사원

다.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라.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마.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안성 검토 및 승인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구축·운영·관리 또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수준 점검 및 감독

<신 설>

<신 설>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6조의11(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전산운영 및 개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준법·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재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6. 인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7. 그 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로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정
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보
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
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가목
에 따른 정보보호 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나목
에 따른 감사 결과의 이행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다목
에 따른 정보보호 위협의 식

<신 설>

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4항라목에 따른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보호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정보보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2(정보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상자에서 제외한

<신 설>

다.

제36조의13(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법 제45
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
준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
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책임 체계의 적정성
2.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수준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수립·
운영
3. 침해사고 및 재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복구 체
계의 적정성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자에게 정보보호수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대상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결과
 2. 평가 대상자가 정보보호 수
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3. 제1호 및 제2호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안정
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여
부 등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를 하기 위하
여 현장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매
년 2월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에게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업무
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 설>

<신 설>

⑤ ~ ⑧ (생 략)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삭 제>

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
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② (생략)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
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

① -----

완화 적용 -----

-----.

1. 2. (현행과 같음)

② -----

완화 적용 -----.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강화
적용 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③ (생략)

<신설>

인 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전년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최근 3년 이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자

나.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①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5의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 또는 중대한 경우</u>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 또는 중대한 경우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u>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3. ----- ----- -----

예보·경보의 전파

4. (생략)

<신설>

<신설>

예보·경보·통지의 전파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48조의2 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 범위·방식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

합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
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 인터
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신 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8조의4(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신 설>

있다.

④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8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8조의6(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의 실시) ① 법 제48조의2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침해사고조사 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보·경보·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침해사고의 규모

2. 침해사고가 발생한 서비스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해당 여부

② 법 제48조의2제9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
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
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
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
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
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하
다)

③ 법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제58조의7(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48조의3 제1항 전단-----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

③ 법 제48조의3제1항과 이 영
제58조의7제2항-----

-----.

제58조의8(침해사고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
우

2. 이용자의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가 분실·도난·유출·
변조·훼손·유용되거나 그 가
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준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원
인,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5. 관련 민원 등을 접수할 수 있
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1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즉시 통지해
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
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
스,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

제58조의3 (생략)

<신설>

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
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
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의9 (현행 제58조의3과 같
음)

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조 제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
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을 포함한
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을 합한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사업연도가 종료
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
을 합한 금액

3. 사업개시 후 사업연도가 종
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
일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까
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과 사유

2. 산정기간, 1일당 금액 및 산
출근거

3. 부과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수납기관

6.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

<신 설>

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
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
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사업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
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
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매출
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는 별

<신 설>

<신 설>

표 5의3과 같다.

제60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

<신 설>

기 및 분할 납부)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
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
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
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
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8조의8제7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신 설>

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0조의15(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 ① 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2.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제출 및 수정·변경 여부

3. 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서
비스 이용자 수 및 이전 실태
점검 결과

4. 그 밖에 실태점검의 효율성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점검 시작 7일 전까
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침해사고가 발생하거
나 침해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개
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
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제1호의 조치에 따른 결과
3.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

	<u>항</u>
<u>제60조의10</u> · <u>제60조의11</u> (생략)	<u>제60조의17</u> · <u>제60조의18</u> (현행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과 같음)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제4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9